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0. 18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10. 6. 이한동 의원 외 10명
  - 나. 회부일자: 2023. 10. 10.
  - 다. 상정일자: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3. 10. 17.)
- 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이한동 의원】

### 가. 제안이유

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동 조례에 따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산업·경제·문화·학술·체육·청소년 분야 등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금 적립액 중 지출액 비중이 낮음. 이에 “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는 등”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동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- 동 조례의 목적을 “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추진”에서 “교류협력,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,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증진”으로 확대함.
- 구청장의 역할 명시(안 제2조제2항)
  - 남북교류협력 및 마포구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역할을 규정함.
- 기금의 용도(안 제4조)
 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및 운용의 범위를 확대함.
  - 또한, 안 제4조제2항에 마포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격려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- 입법예고: 2023. 8. 17. ~ 8. 21. 결과: 의견 없음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

라. 기금조성현황

<2023년도 말 남북협력기금 조성액>

(단위 : 천원)

2022년도 말 조성액 ㉠	2023년도 조성계획			2023년도 말 조성액 ㉡ = ㉢ + ㉠	비 고
	수입 ㉢	지출 ㉣	증감 ㉤ = ㉢ - ㉣		
587,798	58,002	30,000	28,002	615,800	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조례안은 이한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동 조례에 따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산업·경제·문화·학술·체육·청소년 분야 등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금 적립액 중 지출액 비중이 낮음.
- 이에 “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는 등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○ 조항별 검토

가. 안 제1조에 동 조례의 목적을 “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추진”에서 “교류협력,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,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증진”으로 개정 확대하는 내용임.

나. 안 제2조제2항에는 남북교류협력 및 마포구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임.

다. 안 제4조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및 운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

안 제4조제2항에는 마포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격려금품 등을

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임.

○ 종합 검토의견

가. “남북교류협력기금”은 남과 북이 통일을 대비해 준비하는 기금이  
나, 현재 남과 북이 경색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 
동 조례에 따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 
이 공동으로 산업·경제·문화·학술·체육·청소년 분야 등”으로 사업  
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매년  
기금 축적액은 2023년 말까지 6억 1,580만원이 조성될 예정이  
나 사실상 사업범위의 제한으로 지출은 어려운 실정임.

나.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 
기준에서도 성과가 부진하거나 설치 목적이 달성된 기금은 불필요  
할 경우 통·폐합 등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, 남북교류협  
력기금이 종전과 같이 유지되어 지출이 되지 않는다면 통·폐합 등  
정비가 필요할 것이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“남북교류협력기금”을  
“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  
는 등”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  
됨.

다.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  
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착지원에 운용하는 본 개정안은  
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라. 다만,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남과 북이 경색단계에서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의 조성은 계속적으로 적립이 요구되며, 개정된 조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출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-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